

진도군 공고 제2023-841호

제29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진 도 군



1. 제29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9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각 1부.

목 록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3-96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생활지원과	
2023-97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에 너 지 과	
2023-98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민 복 지 과	
2023-99	진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 민 복 지 과	
2023-100	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족 행 복 과	
2023-101	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족 행 복 과	
2023-102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체 육 과	
2023-103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체 육 과	
2023-104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 림 휴 양 과	
2023-105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 림 휴 양 과	
2023-106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유통사업단	
2023-10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세 무 회 계 과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96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 개정

2. 주요 내용

- 조례 이탈자 등 수정에 따른 조항 개정(제1조, 제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제8조)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근거법령 규정 명확화
- 제목과 내용 불부합 조항 개정(제10조)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을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으로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9. ~ 8. 29.(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교통수단”란” 을 ““특별교통수단”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를 “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이동지원센터 운영)” 을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①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지원센터장은” 을 “이동지원센터는”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 를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 를 “운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특별교통수단</u>”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 차량(장애인 콜택시)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교통약자</u>”란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p> <p>제8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는 제14조제1항의 수탁을 받은 자가 되며, 수탁을 받은자 또는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장이라고 칭한다.</p> <p>② <u>이동지원센터장</u>은 다음 각</p>	<p>제1조(목적) -----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 ----- -----.</p> <p>제2조(정의) ----- -----.</p> <p>1. “<u>특별교통수단</u>”이란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법 제2조제1호</u>----- ----- ----- -----.</p> <p>제8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u>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u>이동지원센터는</u> -----</p>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략)

제9조(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① (생략)

② 지원된 보조금 및 자체수입
금에 대하여는 「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

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
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제9조(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진도군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 운행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9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2023. 5. 3. 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영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총사업비 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탁운영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소상공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16. ~ 9. 5.(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원안의결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퍼센트까지”를 “사업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진도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 중 “「진도군 보조금관리조례」 또는 「진도군 재무 회계규칙」”을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또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상공인의 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98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2021. 7. 14.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부 개정됨
 -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제3항에는 “군수는 제2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유사 성격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함
- 조례 내용 중 관련 법령 및 조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불부합 근거법령 개정(안 제3조, 안 제12조)
 -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동법 제2조제8호로 수정
 - 안 제12조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행에 맞게 개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법령 변경(안 제6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23. ~ 9. 1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수정의결

○ 수정안

조 항	당 초	수 정
제6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대조표

개정안	수정안
<p>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p>	<p>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p>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6조 중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5. (생략)</p> <p>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제2조제8호-----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p> <p>제12조(수당 등) ----- ----- -----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

진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9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고독사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
- 예방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고독사 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등에 관한 사항(안 제 7조~8조)
 - 지원대상자 및 시행 가능 사업의 조건 규정
- 협력체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건 규정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9. 6. ~ 9. 2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원안의결

진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0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범위 확대 :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요원
 - 안 제1조, 제3조~제6조, 제10조~제11조
-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근거 신설
 - 안 제6조제1항제4호
-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 등 신설
 - 안 제7조~제9조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16. ~ 2023. 9. 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원안의결

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

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1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공립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 근거 마련 및 개정된 상위법 적용을 위해 조례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축요양시설 명칭 및 위치 명시(안 제2조)
 - 명칭(진도군 공립노인요양원) / 위치(진도읍 남산2길 21)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제4조)
 -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안 제5조~7조, 제10조, 제13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17조~제18조, 제20조)
 - ~에 의거, ~에 의하여, ~에 의한 ⇨ ~에 따라/~에 따라/~에 따른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9. 20. ~ 10. 1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개선의견 : 운영위원회 성별 균형 고려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11. 원안의결

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기능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입소자”를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자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 등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입소자 등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욕창예방과 재활치료
4.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5. 기타 요양 및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되,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소비용) 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

제9조제1항 단서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2항”을 “에 따라 시설”로, “비영리

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로서”를 “자로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수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소자”를 “입소자 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입소자가”를 “입소자 등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요양시설”을 “요양원”으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1 진도군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진도군 공립노인요양원”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2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입소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u> <p><신설></p>	<p>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 ----- ----- ----- -----.</p> <p>제3조(기능 및 업무)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자 등"이라 한다)</u>----- ----- <p>② <u>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입소자 등의 생활 의욕 증진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u> 2. <u>입소자 등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u> 3. <u>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욕창예방과 재활치료</u> 4. <u>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u> 5. <u>기타 요양 및 재가노인복지를</u>

제4조(업무 및 시설) ①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 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욕창 예방과 재활치료
4.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5. 기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식당, 조리실
2.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3. 물리치료실, 운동실, 요양실
4. 의무실, 간호사실
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등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시설)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5조(입소대상) ① -----

----- 하되,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자의 배우자가 치매·중풍 등 질환자일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 입소 대상자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 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

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1. -----
따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당하는 자로서 진도군 관내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시설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 (생략)

제7조(입소비용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장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

② 시설의 장이 매월 청구 및 수납할 입소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료입소 대상자는 제5조제1항제2호 해당자로 한다.

제8조(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6조(입소절차)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입소비용) 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퇴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운영·관리) ① 요양원의 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2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서식)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제9조(운영·관리) ①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제5항에 따라 시설-----

----- 하고있는 사회복지
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
----- .

② ----- 따라 -----
----- . -----
----- .

제10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
- 제9조에 따라 -----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

----- .

②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
1조의 규정에 따르고-----

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2. ~ 4.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간사는 장수복지담당이 된다.

③ (생략)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 4. (생략)

-----.

제11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자로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

1. ----- 가족행복과장-----
2. ~ 4. (현행과 같음)

② -----

----- 노인복지팀장-----.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제9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원-----

-----.

1. ----- 입소자 등-----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하는 요양원은 군수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위탁자 또는 수탁자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8조(지원) 군수는 제9조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생략)

제14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제1항에 따라 -----

-----.

제16조(손해배상) ① -----
----- 입소자 등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 따라 -----

-----.

제18조(지원) -----
따라 -----
----- 요양원 -----
----- 비용의 -----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1] 진도군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7
진도군 노인요양원	진도군 의신면 칠전길 22-42

음)

② ----- 제1항에 따라 -----

-----.

[별표1] 진도군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7
진도군 노인요양원	진도군 의신면 칠전길 22-42
<u>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u>	<u>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21</u>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2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기 및 기능 신설(안 제15조 ~ 안 제17조)
 - 간사, 위촉위원 임기 3년, 심의·자문 내용 등
-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 신설(안 제18조 ~ 안 제19조)
 - 위원장 직무대행, 회의 개최 요건 등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도서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7. 26. ~ 2023. 8. 1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05. 원안의결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도서관 운영위원회)”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으로 하고,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과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을 “위원”으로, “자 중에서 군수가”를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p>제16조 ~ 제20조 (생략)</p>	<p>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p>
-------------------------	--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3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법 제2조에 따라 자격 요건 명시(안 제2조제3호)
- 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진도군체육회 및 진도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의무사항 명시(안 제11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30. ~ 9. 1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원안의결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진도군”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 이란”을 ““생활체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스포츠지도자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체육회 및 진도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나. 관서운영 기본경비
- 다. 사무시설 임차료
- 라.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u> <u>진도군의</u>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u>“생활체육”이란</u>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p> <p>4. (생략)</p> <p>5. <u>“체육지도자”란</u>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u>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생활체육”이란</u> -----</p> <p>4. (현행과 같음)</p> <p>5. -----</p> <p style="text-align: center;">----- <u>지도할 수 있도록</u></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가. <u>스포츠지도자</u></p> <p style="text-align: center;">나. <u>건강운동관리사</u></p> <p style="text-align: center;">다. <u>장애인스포츠지도사</u></p> <p style="text-align: center;">라. <u>유소년스포츠지도사</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5. ~ 6. (생략)</p>	<p>5. ~ 6. (현행과 같음)</p>

제11조(사업위탁)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체육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사업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체육회 및 진도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나. 관서운영 기본경비

다. 사무시설 임차료

라.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④ (현행과 같음)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4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제4조)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 수목 기증 분양등 관리방안(안 제6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9. ~ 2023.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원안의결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무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수목 소유자의 수목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군 예산 절감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제7조(수목 분양)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분양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목 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분양되는 수목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10조(수목관리) 군수는 나무은행 내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목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진도군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수목 기증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비용은 수목 조달가격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무은행 수목 분양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			
	연 락 처 (담당자)			
	주 소			
나무분양신청	신청 수종 및 수량	수 종 명	규 격	수 량
	식재 예정지			
	용도 및 목적			
	희망 인수기한			
기타사항				

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3.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

기본 정 보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목소재지			
		발생사유		옮겨심기 가능기간	
		수목 수량(규격)			

현 장 조 사	조사일시		조사자 직·성명	
	현장여건			
	장비투입 여 부			
	옮겨심기 가능수량			
	조치의견			
	소요예산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5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마을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보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 신규설치·보수의 제한(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30 . ~ 9. 1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5. 원안의결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하는 마을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보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주민 휴식을 위한 그늘쉼터 기능의 정자를 말한다.
2. “신규설치”란 새로 쉼터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쉼터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산림휴양과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설치된 쉼터를 실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서로 쉼터가 설치된 읍면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마을쉼터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모든 마을 쉼터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장소) ① 마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
2.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마을쉼터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신규설치·보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마을 내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
2. 10년 이내의 신규 설치 된 쉼터가 있는 경우
3.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 영리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복지회관, 종교시설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 내
4. 도로변, 농로, 등산로 등 마을과 현저히 떨어진 곳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보수를 제한한다.

1. 3년 이내의 재보수
2.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이용률이 낮고 보수하여도 사용기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유지관리) 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쉼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총괄부서의 장은 정자 설치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안내문을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등) 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쉼터를 파손한 경우에는 훼손자가 이를 변상한다.

② 쉼터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처분의 제한) 군수의 승인 없이 쉼터의 철거·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설 안 내 문

본 시설 내 텐트, 창문 등의 방풍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기타 불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면 - 001
위 치	
관리책임	정 읍면장
	부 ○○담당
연 락 처	000-0000 (읍면 담당자 연락처)

(소재 : 포맥스 / 규격 : 128*96mm / 휴명명조 20p,15p)

<신 설>

제4조(신규설치·보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
치를 제한한다.

1.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
2. ~ 4(생 략)

제5조(신규설치·보수의 우선순위) ①
신규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쉼터가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제5조(설치장소) ① 마을쉼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
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
회관, 공원 등)
2.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
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
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
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쉼터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
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
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신규설치·보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
치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의 이
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경
우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마을 내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
2. ~ 4(생 략)

<삭 제>

3.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되거나 철거가 예정인 경우

4. 2개 마을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손이 심각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

2. 보수 시 사용기한이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

제6조(신청절차)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씬터 신규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관리 등)① 씬터 관리책임자는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으로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씬터를 개방하여 공동이용 되도록 하고 수시로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를 한다.

③ 도포 등 지원이 제한되는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체 부담한다.

④ 씬터 주무부서는 별지 제2-1호 및

<삭제>

제7조(유지관리) 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씬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

제2-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설관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컴퓨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총괄부서의 장

<p>제8조(변상조치 등) 제9조(처분의 제한) 제10조(준용) 제11조(규칙)</p>	<p>은 정자 설치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안내문을 시설물에 부 착하여야 한다.</p> <p>제9조(변상조치 등) 제10조(처분의 제한) 제11조(준용) 제12조(규칙)</p>
--	---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6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 농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진도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생산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9. 20. ~ 2023. 10. 1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10. 11. 원안의결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에 대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제6조(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2. 수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3.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4. 해외 마케팅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수출업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2.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현지 판촉행사 개최
4.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수출 교육 및 컨설팅) 군수는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
2. 무역,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연수
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
4. 농수산물 생산·유통·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5. 국내·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제9조(농수산물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유통 관련 각종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제10조(수출 기여자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에 기여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23-10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에 매입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구)칠전초등학교 추가 부지 매입
- 『지방소멸대응기금』청년창업농장 조성부지 매입

3. 세부 내역 : 첨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83 2	412,439 1,844	2,305,726 620,000	8	13,854	1,274,911	91 2	426,293 1,844	3,580,637 62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81 2	406,571 1,844	2,278,608 620,000	8	13,854	1,274,911	89 2	420,425 1,844	3,553,519 62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5,868	27,118				2	5,868	27,118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원)

(단위 : m², 천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학교	의신면 칠전리 744	12,243 (건물 1,268)	578,000	2023.11.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 거점시설 및 주거공간 조성	
2	전	의신면 칠전리 704	4,217				
3	답	의신면 칠전리 707-3	139				
4	도로	의신면 칠전리 700-4	294				
5	구거	의신면 칠전리 745-1	106				
6	구거	의신면 칠전리 746	9				
7	답	군내면 분토리 1722-3	2,821.1	136,199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창업농장 조성	

|| 목 차 ||

목록	제 목	안 건 요 지	제안부서
1	「지방소멸대응기금」 (구)칠전초등학교 추가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의신면 칠전리 744외 5필지 - 면 적 : 토지 17,008㎡ 건물 1,268㎡ - 대장가액(감정) : 578,000천원 - 소 유 자 : 전라남도 교육감 - 목 적 :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거점 시설을 조성 	인구정책실 (고향사랑팀)
2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창업농장 조성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군내면 분토리 1722-3 - 면 적 : 토지 2,821.1㎡ - 대장가액(감정) : 136,199천원 - 소 유 자 : 양철민 - 목 적 : 청년창업농장 조성부지 매입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지방소멸대응기금」 (구)칠전초등학교 추가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구)칠전초등학교를 매입 후 청년인구 유입 및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해당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구분	구분	위치	지목	면 적(m ²)	재산가액(천원)	비 고
계				18,276	578,000	
당초	건물	의신면 칠전리 744	건물 (12동)	1,268	450,000	기존 부지
	토지	의신면 칠전리 744	학교 용지	12,243	50,000	
추가	토지	의신면 칠전리 704 외 4필지	전, 답	4,765	78,000	추가 부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4. 주관과 의견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거점 시설 및 주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I 위치도



II 현장사진



참고

건축물, 토지 매입 조서

구분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합계					18,276	
토지	계				17,008	
①	의신	칠전	744	학교용지	12,243	전라남도 교육감
②	의신	칠전	704	전	4,217	전라남도 교육감
③			707-3	답	139	
④			700-4	도로	294	
⑤			745-1	구거	106	
⑥			746	구거	9	
건물	계				1,268	
①	의신	칠전	744	교실	803	전라남도 교육감
②				관사, 숙직실	147	
③				화장실	57	
④				창고	78	
⑤				취사장, 급식실	183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창업농장 조성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기존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사업 예정부지인 임회면 삼막리 753-4 외 1필지는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약 6억원) 예상되며, 농업기술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져 추후 스마트팜 컨설팅 및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농업기술센터와 인접부지인 군내면 분토리 1722-3번지를 취득하여 스마트팜 신축 후 청년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에게 임차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재산가액 (천원)	비 고
계		1필지			2,821.1	136,199	
1	토지	군내면 분토리 1722-3	답	양철민	2,821.1	136,199	하우스 (4동, 2,604㎡)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4. 주관과 의견

- 전문가 자문(토목 및 스마트팜 설계 업체) 결과, 현재 예정부지에 스마트팜 신축시 토목공사비(약 6억원) 과다 발생 예상
- 배수로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인·허가와 마을 인접부지 공사에 따른 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예상됨
- 검토결과, 예정부지를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한 군내면 분토리 1722-3번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장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I 위치도



II 현장사진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11호	「지방소멸대응기금」 (구)칠천초등학교 추가 매입	인구정책실 (고향사랑팀)	- 매입대상 : 의신면 칠천리 744외 5필지 토지 17,008㎡ 건물 1,268㎡ - 대장가액(감정) : 578,000천원 - 목 적 :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거점 시설을 조성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10.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흥 섭	가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가		
3	위 원	정 기 문	가		
4	위 원	이 미 예	가		
5	위 원	정 동 조	가		
6	위 원	이 재 식	가		
7	위 원	이 애 순	가		
8	위 원	이 상 립	가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 -13호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창업농장 조성부지 매입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 매입대상 : 군내면 분토리 1722-3 토지 2,821.1㎡ - 대장가액(감정) : 136,199천원 - 목 적 : 청년창업농장 조성부지 매입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10.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흥 섭	우 흥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립	이상립		